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진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126

발의연월일: 2024 12. 31.

발 의 자:전진숙・이수진・허종식

김정호 • 이인영 • 정을호

권칠승 · 이개호 · 윤후덕

임호선 · 박희승 · 김 윤

김선민 · 강선우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또는 중증질환 치료제는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매우 비싸서 건강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,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「복권 및 복권기금법」 및 현행법을 각각 개정하여 복권수익금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또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(안 제108조의2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

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712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8조의2제2항 중 "있다"를 "있고, 「복권 및 복권기금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지원된"을 "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된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신설한다.

- ⑤ 공단은 제2항에 따라 「복권 및 복권기금법」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.
- 1.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
- 2.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08조의2(보험재정에 대한 정 제108조의2(보험재정에 대한 정 부지원) ① (생 략) 부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공단은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. 「복권 및 복권기금법」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다. ③ (생략) ③ (현행과 같음)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 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 민건강증진법」에 따른 국민건 에 사용한다. 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된-----1. ~ 3. (생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⑤ 공단은 제2항에 따라 「복 권 및 복권기금법」에 따라 복 권수익금을 배분받은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. 1.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희귀난 치성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2.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보건

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질 환자에 대한 보험급여